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시장
- 나. 의안번호 : 제607호
- 다. 제출일자 : 2019. 3. 29
- 라. 회부일자 : 2019. 4. 3

## 2. 제안사유

- 가. 2019년 3월 1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3월 27일 수도권교통본부의 기존 업무를 위원회로 이관 후 본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산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음.
- 나.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 해산을 위하여 시의회의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의결을 구함.

## 3. 주요내용

- 가.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을 폐지하고, 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는 주무관청이 포괄 승계하도록 하고, 조합의 소관 사무는 주무관청이 승계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제3조)

나. 종전의 규약에 따른 조합회의 위원은 조합해산 청산인을 선임한 날로부터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4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기존 수도권 교통본부의 사무이관 및 조합해산을 추진하도록 현행 수도권 교통조합규약 폐지, 조합 권리 및 사무에 대한 주무관청 승계, 조합회의 위원 경과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 참고 :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후략 -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 제1항을 준용한다.

### 나. 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를<sup>1)</sup> 설립하여<sup>2)</sup> 운영하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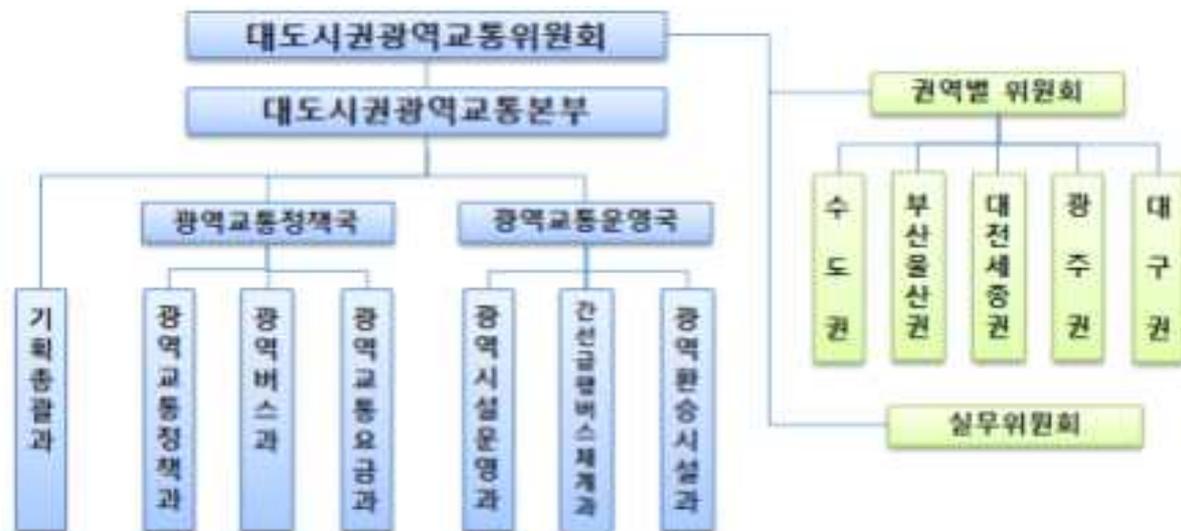
최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간 논의를 통해 대도시권 교통난해소,

1) 설립당시의 명칭은 “수도권교통조합”이었으나 3개 시도의회 의결을 거친 규약변경을 통해 2007년 9월 “수도권교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2) 3개 시도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2005년 2월 수도권교통조합이 설립됨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라고 한다.)설립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2019년 3월 19일 대광위가 출범하였음<sup>3)</sup>

- 대광위는 정무직 위원장과 중앙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합의기구와 수도권을 포함한 5개 대도시권 권역별 위원회, 2개국 7개과로 구성된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담당할 예정임<sup>4)</sup>

※ 참고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조직도



- 대광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 업무를 중점으로 각 권역별 BRT, 환승센터 도입 등 그간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③ (생략)

4) 국토부 보도자료(2019.3.19.),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3.19일 공식 출범”

## 행하게 될 것임

- 본 동의안은 대광위 출범에 따라 기존 “수도권교통본부”와의 업무 중복이 불가피하여 업무이관 및 조합해산이 추진되고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사항<sup>5)</sup>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교통본부 해산을 위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본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의결이후 경기도, 인천시 지방의회의 조합규약 폐지가 의결<sup>6)</sup>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 할 때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에 시행될 것이고,

따라서, 부칙 제3조에 따른 사무이관이 해당 주무관청에서 업무를 승계 받아 대광위에 각각 이관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교통본부(해산추진단)가 각 지자체를 대행하여 대광위로 사무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이외에 해산의 경우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sup>7)</sup>에도 불구하고 조합회의<sup>8)</sup>에서 의결된 “조합해산 결의안” 및 “청산인 선임안”을 제외

5)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 / 2019.4.19.의결

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해산 기본계획(2019.3) / 인천시, 경기도(의회일정에 따라 5월중 의결예정)

7) 지방자치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8)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해산 기본계획(2019.3) / 2019.4.19. 의결

1.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해산결의안      2. 수도권교통본부 청산인 선임안  
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

하고 “조합규약 및 관계규정 폐지안”에 대해서만 서울시의회로부터  
동의안을 의결코자하는 것이 향후 조합해산 의결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